Ⅰ. 序論

내년(1998)부터 退職金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企業年金制度가 '退職年金'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예정이다. 그 동안 기업들은 피고용자의 퇴직금설계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從業員退職積立保險과 은행, 투자신탁회사의 從業員退職積立信託에 의존하여 왔으나, 이들 상품은 滿期一時金 지급형태만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데 따른 危險負擔과 稅制上의 不利益이 있었다. 그러나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피고용자는 퇴직금을 평생 年金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. 한편, 고용주도 일시금형태의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담한 갹출금 전액을 損費로 인정받음으로써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. 국가에서 운영하는 公的年金인 國民年金과 지난 '94년 도입된 個人年金을 연결하는 退職年金制度의 도입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老後保障體系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특히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다. 이에 따라 OECD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및 기업연금제도의 차이,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의 개폐가능성 및 통계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국가간 상호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.

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이해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국가간 상호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선 기업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각 국별 제도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·고찰하기로 한다. 그리고 제3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소위 3층보장론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(first pillar pension)의 일반적인 유형과 각 국별 제도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한 후,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하기로 한다.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한 OECD회원국들의 懸案問題를 고찰함으로써 제도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.